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이태성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노동자이사제’에서 ‘노동이사제’로 하며, 노동이사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과 공사 등 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사 등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다.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3).

라. 노동이사의 임기 종료 후 적합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동이사의 불이익금지 규정을 개선함(안 제12조).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